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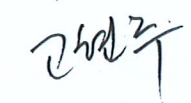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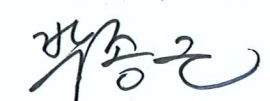



계약심의위원회 의결서

1. 회의 일시 : 2019.12.05. 14:00
2. 회의 장소 : 총무처장실
3. 참석 위원 : 총원 5명 중 5명 참석

| |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|---|
| 위원장 | 총무처장 | 조성상 | 조성상  |
| 위원 | 총무처 총무팀장 | 이강수 | 이강수  |
| 위원 | 법무팀장 | 고현주 | 고현주  |
| 위원 | 석유비축처 비축기술팀장 | 박종근 | 박종근  |
| 위원 | 비축시설처 건설사업팀장 | 백덕기 | 백덕기  |

4. 부의안건 및 의사결과

| 구분 | 안 건 명 | 의사결과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1 | 서해플랜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(안) | 입찰참가자격 3개월간 제한 |
| 2 | SK건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(안) | 부결 |

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

간 사 : 계약심의위원회 재적위원 5인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.

위원장 : 성원이 되었으므로,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. 첫 번째 안건은 “서해플랜트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(안)”이며, 심의에 앞서 금번 안건 제안자인 서산지사를 대신하여 조달팀 손정은 대리가 안건 설명 부탁드립니다.

조달팀 대리 : (안건 설명)

위원장 : 안건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.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질의·토론 부탁드립니다.

비촉기술팀장 : 본 건 관련 해당업체에 대한 제재 기간은 최대 6개월이고, 1/2까지 감경이 가능한 것이 맞습니까?

조달팀 대리 : 네. 그렇습니다.

위원장 : 업체가 계약을 포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?

조달팀 대리 : 업체가 일방적으로 낙찰 후 계약체결을 한달 뒤로 미루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우리 공사 일정상 불가하다고 하자 인력투입이 불가능하다며 계약체결을 포기하였습니다.

위원장 : 그렇다면 이 업체로 인해 공사가 피해를 본 것이 있습니까?

조달팀 대리 : 낙찰 후 계약포기를 함으로써, 재 입찰절차를 거치게 되어 1개월 정도 사업이 지연된 것 이외의 피해는 없었습니다.

법무팀장 : 안건의 경우 계약체결 포기의 정당한 이유 유무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.

비촉기술팀장 : 입찰공고시 입찰 및 사업일정에 대해 미리 공지가 되고, 낙찰 전에 재차 수행가능여부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찰 후 계약 체결 포기를 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.

총무팀장 : 네. 동의합니다.

법무팀장 : 동의합니다.

건설사업팀장 : 동의합니다.

위원장 :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면 감경에 대한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 업체가 이전에도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?

조달팀 대리 : 네. 2017년 6월에 1.5개월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.

비촉기술팀장 : 본 업체는 이전에도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감경에는 회의적으로 생각되지만,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1.5개월을 감경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.

건설사업팀장 : 영세업체가 공공기관의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사업일정 조정실패로 계약포기를 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1/2인 3개월을 감경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.

법무팀장 : 건설사업팀장 의견에 동의합니다.

총무팀장 : 건설사업팀장 의견에 동의합니다.

위원장 : 네,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6개월에서 1/2 감경한 3개월간 서해플랜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위원장 : 두번째 안건은 “SK건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(안)”이며, 심의에 앞서 안건 제안자인 건설계획팀장이 안건 설명 부탁드립니다.

건설계획팀장 : (안건 설명)

위원장 : 안건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.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질의·토론 부탁드립니다.

건설사업팀장 : 본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심의한 서울시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을 원인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 ‘처분제외’로 결정하였는데, 이유는 무엇입니까?

건설계획팀장 :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의무위반과 근로자의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‘처분제외’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총무팀장 :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당여부를 심의할 때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참고할 수 있나요?

건설계획팀장 :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“「산업안전보건법」상 위반행위로 인해 근로자에게 중대 위해를 가한 자”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에 서울시의 결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
법무팀장 :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의 문리상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위반행위와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고, 행정처분신청에 대한 서울시의 판단과 본 사안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를 종합하여 보면 법 위반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

위원장 : 관련자료 및 심의내용을 종합하여 위원님들의 최종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.

건설사업팀장 :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.

법무팀장 : 동의합니다.

총무팀장 : 동의합니다.

비축기술팀장 : 동의합니다.

위원장 : 네,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SK건설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심의(안)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